#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4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최형두·고동진·서지영

박정훈 • 조정훈 • 윤영석

이헌승 · 유상범 · 김종양

최수진 · 김소희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

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 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 조정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제21조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따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자의 규모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생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을 심의·조정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2.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
	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 조정 및 제4항
	<u>에 따른 조정</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③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	2
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마.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
	<u>가 추천하는 사람</u>
	ı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 략)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현행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 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 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1/20소(엽의 및 소장) ① (연행과
같음)
②
<u>다만, 사회보장</u>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따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
자의 규모가 제20조에 따른 사
회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